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51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개명전 성명: B)
	2. C
	3. D(개명전 성명: E)
	4. F(개명전 성명: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1. [redacted]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D, F은 망 H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망 H의 배우자이며, 망 H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이다.

나. 망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10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였고, 2015. 11. 2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 L, 망인의 사위 M와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2016. 5. 31. 및 2016. 10. 13.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redacted]국세청장은 망인이 운영하던 법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redacted]에 소재한 N회사(이하 'N'라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미화 4,000,000달러와 O회사(이하 'O'라 한다)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88,633,660엔(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구분	N(배당소득)	O(근로소득)	종합소득세(가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외화(달러)	원화환산(원)	외화(엔)	원화환산(원)	세 포함)(원)
2009년	1,000,000	1,167,600,000	16,667,250	228,269,000	897,631,410
2010년	1,000,000	1,138,900,000	15,660,600	204,921,000	862,121,540
2011년	1,000,000	1,153,300,000	14,806,210	206,095,000	821,411,220
2012년	1,000,000	1,071,100,000	14,206,050	200,425,000	726,850,390
2013년	-	-	17,458,950	193,816,000	100,716,890
2014년	-	-	9,834,600	94,555,000	47,245,740
합계	4,000,000	4,530,900,000	88,633,660	1,128,083,000	3,455,977,190

라. 이에 따라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 및 L, M에 대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망인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망인의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9년 귀속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2010년 내지 2014년 귀속 부분)에 관하여 2017.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21.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2.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 내지 16, 19, 20, 24, 25, 32호증, 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가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거주자 미해당

망인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약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은 [redacted] 특별영주자로 배우자인 L과 [redacted]에 위치한 P호텔에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 국내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이나 망 H은 망인과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J과 K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나 위 회사들의 사업기반은 국내가 아닌 [redacted]이고, 망인은 [redacted]에서 위 회사들의 사업을 관리한 점, 망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redacted] 조세조약상 [redacted] 거주자 해당

설령 망인이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redacted] 소득세법에 따른 [redacted] 거주자에 해당하고, [redacted] 국과 [redacted] 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체약국에만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계의 중심지의 거주자가 된다. 망인의 경우 [redacted] P호텔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여 [redacted] 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14. 9. 30.이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인의 주민등록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이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redacted]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점, 망인이 원고들과 생활관계를 같이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redacted]으로 보아야 한다.

3)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망인에게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이므로 망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족관계 등

가) 망인의 가족은 배우자 L(생년월일: Q), 아들 망 H(생년월일: R), 며느리 원고 C(생년월일: S), 손자녀 원고 A(생년월일: T), D(생년월일: U), F(생년월일: V), 사위 M가 있었다.

나) 망인은 1989. 1. 17. '[redacted]구 W'에 세대주로 전입하였고, 원고들은 1998. 1. 8. 망인이 세대주였던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

망인과 원고들은 2001. 7. 4. '[redacted]구 X건물 Y호'에 전입하였고, 2014.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31. '[redacted]구 Z아파트, AA호'에 전입하였다.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세대주가 원고 C으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2003. 7. 5. 국내에서 출국한 다음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다.

라) 망인이 2008. 5. 15.경 [redacted]부 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는 '본인은 1963년에 J을 창업하여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회사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금원은 본인이 [redacted]아에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며, 여권의 기한이 2008. 7.에 만료되므로 국가를 위하여 석유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갱신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이 2014. 6. 2. [redacted]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제출한 재기수사신청서에는 '대검찰청 2003내사71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이 본인의 출국을 이유로 내사중지처분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95세의 고령으로 생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부모의 묘소를 참배하고, 변제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변제하여 모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본인에 대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의 재산상황 등

가)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작성된 재산총괄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류	소재지	평가가액(원)
토지	[redacted]군 AB	26,677,170
토지	[redacted]시 AC	21,961,8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토지	[redacted]시 AD	19,451,835
고시된 공동주택	[redacted]구 Z아파트 AA호	3,065,000,000
비상장주식	J	75,746,840,000
비상장주식	K	129,181,275,000
현금 및 기타자산	일본-AE은행	2,332,293,035
퇴직금	[redacted]구 AF, AG호	2,462,986,625
현금 및 기타자산		2,300,000,000
(중략)		
합계		215,397,716,991

나) 망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J과 K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아래와 같다.

연도	J		K	합계(원)
	급여(원)	배당(원)	급여(원)	
2010	182,000,000	-	-	182,000,000
2011	169,000,000	-	-	169,000,000
2012	183,000,000	-	40,878,494	223,878,494
2013	215,569,180	-	167,863,947	383,433,127
2014	472,326,977	15,200,000,000	213,911,238	15,886,238,215
합계	1,221,896,157	15,200,000,000	422,653,679	16,844,549,836

다) 망인의 일본 소득세 신고내역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득신고내역		비고
	외화(엔)	원화환산(원)[1]	
2009년	98,838,992	1,034,201,793	
2010년	164,063,784	1,716,681,404	
2011년	112,452,368	1,176,645,353	
2012년	69,889,886	731,292,822	
2013년	44,757,953	468,324,84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2014년	1,548,397,800	16,201,660,380	N 배당소득 9,043,200엔, O 급여소득 9,834,600엔 포함
합계	2,038,400,783	21,328,806,593	

라) J은 1963. 11. 29. 설립되었고, K는 1981. 4. 설립되었으며 모두 '[redacted]구 AF, AG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위 각 회사의 수익은 [redacted]국영업체인 AH, 중국의 AI회사와 생산물분배계약(유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른 기투입 원가를 초과하는 원유판매대금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분배금 등에서 발생한다.

3) 망 H 및 원고 A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소득은 모두 J에서 지급되었다.

(단위: 원)

구분	망 H			원고 A	합계
	근로소득	퇴직소득	합계	근로소득	
2009	46,800,000				46,800,000
2010	78,000,000				78,000,000
2011	75,000,000				75,000,000
2012	60,000,000	55,753,425	115,753,425		115,753,425
2013				39,045,160	39,045,160
2014				63,874,670	63,874,670
합계	259,800,000	55,753,425	315,553,425	102,919,830	418,473,255

4) 망인은 2013. 11. 27.부터 2015. 11. 26.까지 원고 A, D 등에게 130,057,246원을 송금하였는데, 주로 100만 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체되었고, 적요란에는 X건물폐기물처리비용, 용돈, 레슨비, 항공료, 등록금, 학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24, 25, 29호증, 을가 제2 내지 4,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변론종결일인 2019. 5. 30. 기준 환율인 1엔당 10.4635원 기준. 원 미만 버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라. 판단

1) 거주자 해당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망인의 가족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가족은 배우자 L, 아들 망 H, 며느리 원고 C, 손자녀 원고 A, D, F 등이 있었고, 망 H은 2012. 7.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 제12호증의 5 참조), L을 제외한 망 H과 원고들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을 세대주로 하여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J과 K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을 하였는데, 망 H이나 원고 A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은 모두 J에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2013년에 만 20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 H이나 A에게 근로소득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생활자금을 같이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2013. 11.경부터 사망 전인 2015. 11.경까지 원고 A 등에게 이사비, 용돈,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점, 망인은 2014. 9. 30. '[redacted]구 Z아파트, AA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과 원고들은 2014. 10. 31.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던 점, 원고 A는 2014. 6.경 망인으로부터 2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9호증 제9쪽, 을가 제12호증의 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다음으로 망인의 자산 등에 관하여 보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재산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액은 약 2,154억 원이고, 그 중 [redacted]에 소재하고 있었던 자산은 AE은행 계좌에 존재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그 금액은 약 23억 원에 불과한 점, 망인의 국내 자산으로 토지와 아파트 이외에 J과 K의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가액의 합계는 약 2,049억 원에 달하는 점, 위 각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상당한 점, 아울러 망인이 J에 관한 의사결정 일부를 일본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가 제5호증), 이는 망인의 출국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이 내사중지되어 망인이 국내에 귀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망인이 일본에서 서명한 서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여부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에 불과한 점(을가 제5호증), 망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금이 약 16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은 망인이 2003년 이후로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망인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망인은 J과 K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의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관여하였고, 망인은 위 각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점, ㉢ 망인은 망인 소유 재산의 상속 등을 위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도 하였고, 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인이 상속재산의 관리자로 변호사를 지정하기도 하여(을가 제1호증) 자산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redacted] 조세조약상 일본거주자 해당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redacted]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redacted] 조세조약상 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redacted]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5,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redacted]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redacted]와 [redacted]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망인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redacted]이므로 [redacted] 조세조약상 [redacted]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즉, [redacted] 조세조약상 [redacted]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redacted]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참조), 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은 [redacted] 거주자에 해당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다(일본 소득세법 제2조 제3호).

망인의 경우, 2003년 이후부터 [redacted]에서 거주하였고, 외국인등록증(갑 제5호증)을 발급받기도 하였으므로 [redacted]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redacted]에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redacted]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다음으로, 망인은 2003년부터 사망시점인 2015. 11.경까지 [redacted]에 위치한 P호텔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여 이는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망인의 주민등록상 과세대상 기간 동안 망인은 망 H 및 원고들과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민등록지였던 '[redacted]구 X건물 Y호'나 '[redacted]구 Z아파트, AA호'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국내에 머물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민등록지는 망 H이나 원고들을 위한 주거 장소에 불과하여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항구적 주거로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곳을 중심으로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실제로 그 곳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적 체류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사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의 판단에서 고려되는 점, ㉡ 망인이 '[redacted]구 X건물 Y호'에 전입한 시기는 2001. 7. 4.인데 망인이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시기는 2003. 7. 5.이므로 망인이 위 주소지에 일정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2014. 9. 30. '[redacted]구 Z아파트, AA호'를 망인 명의로 취득하기도 한 점, ㉣ 망인은 위 각 주소지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주소지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redacted]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망인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 망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법인인 J과 K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의 총액이 약 168억 원에 이르고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 망인이 [redacted]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급여 등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산 중 대부분이 국내에 존재하였던 점, ㉣ 망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에 따른 종국적인 처분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입국하기를 희망하였던 점, ㉤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redacted] 소득세 신고서(갑 제2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 중 망인이 [redacted]에 신고한 소득은 2014년 O로부터 지급받은 9,834,600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3)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3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소득 등과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② 망인은 2010년과 2011년에 J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도 N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했는데, 망인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0년과 2011년의 종합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별지

[표 1]

피고	처분일	세목	귀속연도	부과세액
[redacted]세무서장	2017. 5. 26.	종합소득세	2009년	897,631,410원 (가산세 441,011,852원 포함)
	2017. 9. 12.		2010년	862,121,540원 (가산세 403,770,107원 포함)
			2011년	821,411,220원 (가산세 357,629,404원 포함)
			2012년	726,850,390원 (가산세 260,298,222원 포함)
			2013년	100,716,890원 (가산세 30,749,107원 포함)
			2014년	47,245,740원 (가산세 12,033,411원 포함)
합계				3,455,977,190원 (가산세 1,505,492,103원 포함)

[표 2]

피고	처분일	세목	귀속연도	부과세액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7. 5. 26.	지방소득세	2009년	89,763,140원
	2017. 9. 12.		2010년	86,212,150원
			2011년	82,141,120원
			2012년	72,685,040원
			2013년	10,071,690원
			2014년	4,724,570원 (가산세 1,203,340원 포함)
합계				345,597,710원 (가산세 1,203,340원 포함)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1. 거주자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일본 소득세법

제2조 이 법에서 다음의 각 호에 제시하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호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계속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끝.